

에스디엔(주) 제7회 무보증 전환사채 청약안내

- 청약일 : 2014년 3월 3일 ~ 3월 4일 (2일간)
- 불일일 : 2014년 3월 6일
- 발행일 : 2014년 3월 6일
- 만기일 : 2017년 3월 6일
- 상장예정일 : 2014년 3월 6일
- 청약취급처 : 엘아이지투자증권(주), 한양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

- 모집총액 : 5,000,000,000원
- 사채의 이율 : 표면금리 4.0%, 만기보장수익률 8.0%
- 정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 100만원
- 전환기액 : 1,048원
- 정약자격 : 실명의 개인 및 법인

에스디엔(주) 제7회 무보증 전환사채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약취급처에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 상호 : 에스디엔 주식회사
- 2 사채의 명칭 : 에스디엔(주) 제7회 무보증 청약금 4.0% 사채의 종류 : 무기금식 이관권 무보증 전환사채
- 3 사채의 발행금액 : 5,000,000,000원
- 4 사채의 발행일 : 각 사채의 권리행권액의 100%
- 5 사채의 만기일 : 2017년 3월 6일
- 6 사채의 상장예정일 : 2014년 3월 6일
- 7 사채의 이율 : 표면금리 연 4.0%, 미기준장수익률 연 8.0% (3개월 복리)
- 8 사채의 권리 : 본 사채의 경우, 공사체증권화에 의해 등록발행으로, 실물자산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증권으로 갈음합니다.
- 9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7년 3월 6일에 원금 113,420원으로 일시상환되며, 원미만은 청탁합니다. 다만, 상환기�이기 이행의 흥행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10 원금지급대행방법 : 한국산업은행 마이너지점
- 11 사채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사채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일 및 이와 함께 3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장을 청탁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흥행여부에 상당기로 하여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며,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1) 청약금율 : 100%
- (2) 청구금액 : 2015년 3월 6일 104.1216%, 2015년 6월 6일 105.2040%, 2015년 9월 6일 106.3081%, 2015년 12월 6일 107.4342%, 2016년 3월 6일 108.5829%, 2016년 6월 6일 109.7546%, 2016년 9월 6일 110.9493%
- (3) 청구 및 지급 시점 : 청약금율 '발행회사'의 본점
- (4) 청약기간 및 청약방법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의 본점에 사번증명으로 조기상환을 청탁한다.
- (5) 지급예정일 : 각 조기상환일
- (6) 2015년 3월 6일, 2015년 6월 6일, 2015년 9월 6일, 2015년 12월 6일, 2016년 3월 6일, 2016년 6월 6일, 2016년 9월 6일, 2016년 12월 6일

② 전환에 관한 사항

- (1) 전환권 행사에 따른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에스디엔 주식회사 기획부 보통주식
- (2) 전환상당구수 : 인액으로 주식 1주당 기관의 할인액으로 본사체의 발행가액인 50억원을 초과할 수 있다. (단, '본 사채'는 각 정약여부에 견본 배포하여, 전환 당시 소수정당의 틴드우에 대해 배제하지 않아서) 기관 배정된 전환사채의 전환상당구로 인해 '발행회사'의 주식의 출현계정은 본사체의 발행금액으로 조기상환을 청탁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주 미만의 금액의 일부분은 전환할 수 없어, 전환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관련금액은 청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기액을 조정한다. 본래에 따른 청탁금액의 조정으로는 (i)의 경우 우수증자, 주식금의 차본인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으로 하여, (ii)의 경우
- 경우 회사채권 발행일로 한다.
- 조장후 전환기액 = 조장전 전환기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디자별발행가격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면,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채가 발행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풀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일 전후기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일 행사기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만 전부 주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전으로 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일 전환기액 또는 행사기액으로 하여, 위의 사채에 의한 조정 후 전환기액의 원본은 절차한다.
- (2) 향후 '기본의 김소 주식회' 및 병합 및 분할 등에 의하여 '전환기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일 전후기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일 행사기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만 전부 주식으로 전환된다. 본래에 따른 '전환기액'은 그 조수식 아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또는 그 조수식 아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으로 '전환기액'을 조정한다. 본래에 따른 '전환기액'은 그 조정일은 밑줄 지문의 김소 주식회 및 병합 등에 기준일이다.
- (3) 본 사채는 밀집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전환기액'을 조정하여 전환기액 조정일 전일까지 기관으로 하여, 신상정의 '발행회사'의 보통주 1개월 가중평균금액(주)과 최근 1주일 가중평균금액(주) 및 최근 1주일 가중평균금액(주)을 중 낮은 경우 그 낮은 것으로 조정하며, 전환기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기액(조정일 전에 신조의 할인발행 등이 되어더라도 전환사채를 보유한 자가 기질 수 있었던 조수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 또는 그 조수식 아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으로 조정된다. 본래에 따른 '전환기액'은 그 낮은 경우로 조정된다.
- (4) 조장전 전환기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기액으로 하여, 주식의 액면가를 부여된 전환기액의 향후로 이루어 발행할 주식의 별도의 계약과 함께 주식의 각 전환사채의 발행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5) 당시 주식방법 등으로 주식가치 상승시킬 때 발생하는 경우 조정액을만족할 때에 밝혀야 한다. 단, 김소 주식방법 등을 통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가중평균금액(주), 주일 가중평균금액(주)과 최근 1주일 가중평균금액(주)을 신상정평균기준의 기관과 최근 1주일 가중평균금액(주)을 신상정평균기준의 주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 후 전환기액은 이전에 기산된 주식에 전환기액을 액면가액으로 이어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 후 전환기액은 신전기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방법 등으로 인한 조정액을만족할 때에 상당 조정한 기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6) 위 항목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전환기액 중 '호'호인 미만 금액은 절정이며, 조정 후 전환기액이 액면가액이 경과되는 그 기준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 (7) 전환기액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되는 날(2014년 4월 6일부터 민기 1개월 전 2017년 2월 1일까지)이다.
- (8) 청약청구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 (9) 기타사항
- (10) 청약청구의 솔직발행사기 : 전용은행권으로 전환상당구부에 체권등록증명 및 전환청구서를 제출할 때 전환의 원인으로 '발행회사'의 명의에서 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허락하는 것으로 본다.
- (11)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이 속한 영업일도의 주식 영업일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일 이후(자금)일 이전인 경우 전환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행된 이자로 배당하는 것이다.
- (12)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 '발행회사'는 명의에서 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전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을 전환권 행사 청구서 제출일 및 신주인수금 납입일로부터 개월 내에 교부하여 상장을 원료한다. (단, 영업개시전기기준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협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14 청약취급처 : 엘아이지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의 본·지점(이하 "인수단")

- 청약의 조정방법
- (1) 청탁자는 소정의 청탁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탁한다.
- (2) 청탁자는 '금융설명비과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탁을 하거나 본래에 따른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 (3) 청탁자는 청약 시 각 청탁처별로 '증정'의 가능여부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 청탁은 불가능하며, 청탁자기구 중 은행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탁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별도 청탁은 불가능하다.
- (4) 청약의 조정방법에 대해서는 청탁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6시까지 접수된 것에 하여 배정장소로 한다.
- (5) 본 사채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자부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장기고정금융투자자에 관한 법률)에 행령 제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청탁장소로는 자 제외는 청탁 전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① 교부장소 : 각 '인수단'의 본·지점

② 교부방법 : 본 사채의 청탁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엘아이지 투자증권의 홈페이지와 '인수단'의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된다.

③ 교부일자 : 2014년 3월 3일 ~ 4일 (영업일간)

④ 청약단위 : 본 사채의 최저 청약단위는 100만원으로 하며, 100만원 이상은 100만원 단위로 한다. 다만 투자자의 최저 청약단위는 50만원으로 한다.

⑤ 청약증거금 : 청약 시 사채 발행일로부터 100%로 해약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14년 3월 6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배정방법

- ① 배정장소 : 계산사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금'에 '인수단'의 각 청약처에서 일관적으로 접수를 받은 청탁금액을 의미하는 인수단에 대하여 계산한 청탁금액을 말한다. 본래에 따른 청탁장소는 인수단의 총 청약금액(인수단 각각의 청약금액)을 합침을 말한다. 본래에 따른 청탁장소는 전용은행권으로는 신상정평균기준으로는 청탁금액에 따라 구조 없이 동일한 배정비율로, 인수단의 각 청탁처에 배정되는 청탁금액에 따라 청탁금액을 평균으로 한다.
- ② 인수단은 '총 청약금액'은 본 사채의 권리총액을 조정하는 경우, 인수단의 각 청약처에게 50%의 원금으로 임의로 안전하게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금은 '대표 관리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 ③ 청탁금액을 배정하는 경우 그 청탁금액대로 배정하고, 미달한 금액은 '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단' 이 각각 계약으로 인수한다.
- ④ 배정장사는 10일 이내로 청탁금액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단위에 대한 전환사채 배정금액은 2014년 3월 5일 '인수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개별통지에 따른다.
- ⑤ 원·불 : 2014년 3월 6일
- ⑥ 사채의 납입은행 : 한국산업은행 마이너지점
- ⑦ 원·불 : 2014년 3월 6일
- ⑧ 기·사·행 : 2014년 3월 6일
- ⑨ 기타사항
- ⑩ 본 사채에 대리인 상세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에스디엔(주)의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⑪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는 에스디엔(주)의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 기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으나 투자자는 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⑫ 본 사채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자본·장기고정금융투자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합니다.)

본 사채 모집을 위한 풍자금과 대형 금융기관의 협력행정 지정은 정부가 담당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친절한 정확한이나 풍자금과의 협의에 따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발행사

SUNDAY
에스디엔 주식회사

대 표
주 관 힐 회사

LIG 투자증권

인 수 회

한양증권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광진로56길 85

문의처 : 02-446-6691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문의처 : 02-3770-5000, 1588-2145